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김정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49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4.

발 의 자 : 김정재 · 박충권 · 박덕흠
조지연 · 강명구 · 김미애
서일준 · 이달희 · 박대출
김승수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군수품 관리 주체를 육군 · 해군 · 공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,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해서는 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병대사령관이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해병대는 창설 이래 상륙작전 · 도서방위 및 특수작전을 주된 임무로 하면서 독자적인 작전 교리와 조직문화를 발전시켜왔음에도 불구하고, 해군에 소속되어 지휘 체계 및 인사 운영 등에서 독립성을 제약받아오고 있음.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와 도서 · 해양 방위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해병대를 독립된 군종으로 편성하여 육군 · 해군 · 공군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해병대를 해군 소속이 아닌 독립된 군종의 하나로 분리하여, 군수품 관리 주체에 해병대를 추가하고, 해병대사령관이 독립적으로 해병대 군수품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해병대의 독립성을 확보하고

4군 체제를 확립하려는 것임(안 제2조 및 제6조제1항·제2항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군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16호), 「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21호), 「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18호), 「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19호), 「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20호) 및 「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4922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수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육군·해군·공군”을 “육군·해군·공군 및 해병대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각군 참모총장”을 “각군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각군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”을 “각군 참모총장”으로 한다.

다만, 해병대 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군수품”이란 「물품관리법」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물품 중 국방부 및 그 직할기관, 합동참모본부(이하 “국방관서”라 한다)와 육군·해군·공군(이하 “각군”이라 한다)에서 관리하는 물품을 말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동산은 제외한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육군·해군·공군 및 해병대</u>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관리기관) ① 국방관서의 장과 <u>각군 참모총장</u> 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관리한다. 다만, <u>해군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 중 해병대의 군수품에 대하여는 해병대사령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.</u>	제6조(관리기관) ① ----- ----- <u>각군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.</u> <u>다만, 해병대 참모총장이 관리하는 군수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리한다.</u>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② 국방관서의 장과 <u>각군 참모총장(해병대사령관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</u>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	② ----- <u>각군 참모총장</u> ----- ----- -----

원 또는 다른 국방관서나 군 또는 다른 중앙관서의 소속 공 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군 수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 할 수 있다. ③ (생 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③ (현행과 같음)
--	---